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2

발의연월일: 2020. 7. 9

발 의 자:이해식・이용우・김성환

김경만・허 영・안규백

박 정ㆍ이상직ㆍ김종민

오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,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한편, 미국,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, 인상률 상한선,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첫째,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 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 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%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 도록 함(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).

또한,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 권은 선순위에 있는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 비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,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.

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,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,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7(미납국세 등의 열람동의 요구)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(제3조제4항에 따른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·지방세의 열람을 위하여 「국세징수법」 제6조의2제1항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계약갱신요구권)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임차인이 3기(期)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
- 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
- 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
- 5.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7.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수 있다.
-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 제7조 단서 중 "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"을 "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국세체납 정보제공 등의 적용례)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보증금 증감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조의7(미납국세 등의 열람동
	의 요구) 임대차계약을 체결하
	려는 사람은 임대인(제3조제4
	항에 따른 임차주택의 양수인
	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
	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
	조에서 같다)이 납부하지 아니
	한 국세·지방세의 열람을 위하
	여 「국세징수법」 제6조의2제
	1항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
	조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
	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
	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
	거부할 수 없다.
<u><신 설></u>	제6조의3(계약갱신요구권) ① 임
	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
	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
	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
	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
	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
	그러하지 아니하다.
	1. 임차인이 3기(期)의 차임액

- 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- 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
- 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
- 5.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7.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
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
 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
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
 경우
- 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당 제 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 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. 다만, 증액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의 100분의 5의 금액을-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
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.
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
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
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차임
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
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
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
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
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
사할 수 있다.
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
<u>증액청구는</u>
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

----.